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1호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903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3
○ 조	레 제 1904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5
○ 조	레 제 1905 호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미 디 어 정 보 과 7
○ 조	레 제 1906 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18
○ 조	레 제 1907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재 무 과 20
○ 조	레 제 1908 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 무 과 29
○ 조	레 제 1909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 무 과 33
○ 조	레 제 1910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 무 과 35
○ 조	레 제 1911 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기 업 지 원 과 37
○ 조	레 제 1912 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업 지 원 과 39
○ 조	레 제 1913 호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생 활 경 제 과 43
○ 조	레 제 1914 호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46
○ 조	레 제 1915 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 성 가 족 과 49
○ 조	레 제 1916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 소 행 정 과 51
○ 조	레 제 1917 호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공 영 개 발 과 55
○ 조	레 제 1918 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설 과 68
○ 조	레 제 1919 호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보 건 행 정 과 71

공 고

○ 공	고 제 1802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75
○ 공	고 제 1806 호 취득세 10월 공시송달	세 무 과 77
○ 공	고 제 1807 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공 원 녹 지 과 80
○ 공	고 제 1810 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수정)	아 동 복 지 과 81
○ 공	고 제 1812 호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세 무 과 91
○ 공	고 제 1816 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0월 공시송달	세 무 과 126
○ 공	고 제 1818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28
○ 보 건 소 공 고 제 9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32

고 시

- 고 시 제 1 1 2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 고 시 제 1 1 3 호 2021회계연도 결산 고시

토 지 정 보 과 133
재 무 과 135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3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2조제3항제1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4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5호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사무
- 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

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

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

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환경적·문화적·인구학적(성별·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8조(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으로 고품질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의 사항(안 제5조)
-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발굴,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 평가 및 표창,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6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직원의 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예방접종사업을 명시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안 제7조제12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7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제7조의2제4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또는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면적이 1천 제곱미터,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하도록”을 각각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6월 이내 3회 분납”을 “연 6회 이내 분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제2항”을 “영 제45조제2항”으로,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9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의 제목“(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②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하려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를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21.)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안 제6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신설 : 안 제11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안 제15조 외 9개조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규정 반영
 -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 조례안 제19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조항 신설 : 조례안 제21조의2
 - 일반재산의 대부 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신설 : 조례안 제27조의2
 -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사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1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8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 중 “밖의 출납보관”을 “밖에 출납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을 “물품관리 등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액과 노임”을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훼손”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훼손하였”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1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이외의”를 “이외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입	입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수	수용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용	산입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산	편입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입	부생	공유재산으로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양	도여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대여	편입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재산	각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매각	체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해체	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폐기	실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분실	납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반납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	모	물품을 자연감하는 경우
자연감	전환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	환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무상증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증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건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분실·훼손 시 조치 방법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 및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른 물품 분실·훼손 시 조치방법 추가 (안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방법 신설 (안 제3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09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해당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2)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0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
으로,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를 “모집·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법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끼진”을 “끼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11조)
 - “규칙 제52조의3” → “규칙 제73조의8”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1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기간 만료(2021. 9. 30.),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2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를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조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등)”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동구 필수노동자”를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로, “기본계획”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1.5.18.)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 기본계획이 아닌,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 : (안 제6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3호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 4. 28.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 (안 제2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 (안 제3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 (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4호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5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에 종합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호, 제4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6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를 “시행령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가정사업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공공용 봉투, 60·125리터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50리터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과 무게 상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단위(원)

구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용도
5 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 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 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 ℓ (13kg)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 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50 ℓ (13kg)	3,920	3,92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75 ℓ (19kg)	4,730	4,73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20 ℓ	2,200	2,2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50 ℓ (13kg)			공공용 봉투
75 ℓ (19kg)			공공용 봉투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사항 정비 : (안 제1조)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 : (안 별표 5)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에 따른 무게 상한 정비 : (안 제9조제3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7호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

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

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 관련)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아적장)를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 m ³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 ³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가.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한 점용·사용	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안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인천광역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표(제5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3.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감 면 대 상	감면율
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 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 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50%

[별표 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 (증가율-500/100)×5/1,000}]

[별지 제1호서식]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통지서			영수증서		
제 호	년도 세입	납	제 호	년도 세입	납	제 호	년도 세입	납	제 호	년도 세입	납
장			장			장			장		
관			관			관			관		
항			항			항			항		
목			목			목			목		
주 관		취급	주 관		취급				세 입 징 수 관 계 좌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 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 다. 년 월 일 은행		

268mm×190mm(일반용지 50g/㎡(재활용품))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2. 3. 1. 시행)으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과오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8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조성 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뜻 추가 (안 제2조 제4호)
-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
- 노상주차장 설치시 보행권 확보방안 신설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6일

남동구 조례 제1919호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 · 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 운영한다.

제8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

호에서 정한 유족 중 1명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장기등 기증사업 홍보(안 제7조 ~ 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0조)
- 비밀의 유지, 표창(안 제11조 ~ 제12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14.(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김*수	인천99아**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철	인천85아**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천	인천84바**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산	인천99아**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김*수	인천82바**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수	인천85사**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진	인천84바**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	인천84바**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고*석	인천86바**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진	인천84바**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현	인천84바**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조*환	인천86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도	인천84바**8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황*종	인천86바**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806 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빈 외 1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10.

남동구청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951103-*****	김**빈	28200	101501-2022-07-2-550-025105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8,583,200
2	951103-*****	김**빈	28200	101501-2022-07-2-550-025107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6,946,930
3	790712-*****	정**기	28200	101501-2022-07-2-530-030933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2,438,070
4	810117-*****	김**은	28200	101501-2022-07-2-580-031170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1,024,210
5	571028-*****	최**희	28200	101501-2022-07-2-551-031489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6,909,190
6	601106-*****	김**년	28200	101501-2022-07-2-580-038403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1,364,070
7	880306-*****	김**오	28200	101501-2022-07-2-570-038405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1,134,310
8	511008-*****	김**덕	28200	101501-2022-07-2-710-038407	취득세	독촉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6,409,230
9	940903-*****	안**희	28200	101501-2022-09-2-550-043307	취득세	수시분	2022-09-13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1,056,710
10	730127-*****	강**영	28200	101501-2022-09-2-570-044416	취득세	수시분	2022-09-13	수령인 없음	1,305,250

공시송달 내역(과세예고 통지)

연번	주민번호	납세자명	송달내용	등기번호	공고사유
1	680205-*****	주**레	상속무신고자 과세예고	1072895147047	폐문부재
2	700331-*****	주**미	상속무신고자 과세예고	1072895147048	보관기간경과후반송
3	440104-*****	박**자	상속무신고자 과세예고	1072895147046	보관기간경과
4	770619-*****	박**진	상속무신고자 과세예고	1072895147043	보관기간경과
5	891105-*****	박**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과세예고 통지서	1072895146944	폐문부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807호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0-130호(2020. 8. 1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22-29호(2022. 8. 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10. 6. ~ 2022. 10. 21.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6293)
7. 열람서류: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810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1. 12. 21.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2.06.21. 시행)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아동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아동복지과
- 연 락 처: ☎ 453-8353, FAX 453-58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1.12.21. 시행)과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2.06.21. 시행)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아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아동”을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등 사유”를 “등의 사유”로,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약한 가구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를 “담임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선정결과 등틀”을 “선정결과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5항 ----- ----- 시행령 제36조제6항-----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 원 대 상) -----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 해당하는 아동으로 ---.	제 3 조 (지 원 대 상) -----	제 3 조 (지 원 대 상) -----	제 3 조 (지 원 대 상) -----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 ----- -----	1. -----	1. -----	1.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라.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정기
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마.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의 아동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
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
가 없는 가구의 아동

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
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
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
한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아동, 차상위계층 아
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삭 제>

<삭 제>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
조에 따른 긴급복지 ----

바. -----

----- 보호가
필요한 -----

사. -----
----- 등의 사유-----
----- 미약한 가
구의 -----

아.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
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
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
동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
인 가구의 아동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
·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생 략)

<신 설>

<삭 제>

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인 가구의 아동

차. ----- 담임교사-----

2. (현행과 같음)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
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
하는 아동

제4조(지원내용)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조·중·석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
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
)-----

-----.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정결
과 를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812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강**범 외 758건
- 서류의 송달지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 서류의 내용 :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불명”, “이사”, “수령인 없음”, “반송함 장기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2.9.30.을 2022.10.31.로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10 월 4 일

남동구청장

2022년 9월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단위 : 원)

순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세액합계	반송사유
1	105305 2022 09 1 550 219569	590125-*****	강**범	131,860	수령인없음
2	105304 2022 09 1 520 010373	520525-*****	강**섭	161,310	수령인없음
3	105305 2022 09 1 580 262493	620726-*****	강**성	129,500	수령인없음
4	105305 2022 09 1 690 277051	950301-*****	강**술	301,560	수령인없음
5	105304 2022 09 1 583 018098	600303-*****	강**숙	534,450	기타
6	105304 2022 09 1 650 005263	420120-*****	강**순	330,730	이사감
7	105304 2022 09 1 530 022916	641130-*****	강**원	13,490	수령인없음
8	105305 2022 09 1 650 271791	000901-*****	강**준	62,280	수령인없음
9	105305 2022 09 1 520 203232	760716-*****	강**진	301,610	기타
10	105304 2022 09 1 570 003934	330101-*****	강**찬	433,180	기타
11	105304 2022 09 1 550 005661	430215-*****	강**한	500,850	기타
12	105304 2022 09 1 700 014327	570515-*****	강**호	2,350,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3	105305 2022 09 1 700 289246	531023-*****	강**	316,960	기타
14	105305 2022 09 1 551 227125	120111-*****	건**개** **식**사	104,600	수령인없음
15	105304 2022 09 1 560 003931	321129-*****	경**월**스	2,515,790	기타
16	105304 2022 09 1 710 000462	110111-*****	고**2**역**시**발**업 (주)	21,812,430	기타
17	105304 2022 09 1 530 013781	561012-*****	고**복	8,899,590	기타
18	105304 2022 09 1 581 018745	601019-*****	고**숙	421,000	기타
19	105305 2022 09 1 510 211403	920711-*****	고**원	77,6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0	105305 2022 09 1 710 296796	710403-*****	고**희	238,900	수령인없음
21	105304 2022 09 1 510 042341	990121-*****	공**상	59,610	수령인없음
22	105304 2022 09 1 710 038064	820128-*****	공**옥	1,557,070	수령인없음
23	105304 2022 09 1 660 039162	861113-*****	공**옥	2,825,340	기타
24	105304 2022 09 1 550 005300	420218-*****	곽**랑	990,900	기타
25	105304 2022 09 1 660 033274	750914-*****	곽**수	110,740	수령인없음
26	105305 2022 09 1 581 240511	620301-*****	곽**옥	55,120	수령인없음
27	105304 2022 09 1 800 021997	631116-*****	곽**은	266,360	수령인없음
28	105304 2022 09 1 660 013878	561202-*****	곽**자	88,320	수령인없음
29	105305 2022 09 1 530 222689	860923-*****	구**	51,480	수령인없음
30	105304 2022 09 1 550 021312	630219-*****	구**건	1,733,110	기타
31	105304 2022 09 1 582 031755	730325-*****	구**승	409,880	수령인없음
32	105305 2022 09 1 510 210608	680607-*****	권**구	58,420	수령인없음
33	105305 2022 09 1 510 210657	680607-*****	권**구	114,710	수령인없음
34	105305 2022 09 1 510 327576	670410-*****	권**산	123,630	수령인없음
35	105305 2022 09 1 690 283455	630928-*****	권**영	722,040	수령인없음
36	105304 2022 09 1 550 028147	651123-*****	권**윤	1,490,090	기타
37	105304 2022 09 1 550 040599	890207-*****	권**일	39,640	수령인없음
38	105305 2022 09 1 520 213687	890207-*****	권**일	50,440	수령인없음
39	105305 2022 09 1 521 208965	890207-*****	권**일	88,530	수령인없음
40	105304 2022 09 1 551 041341	930131-*****	권**진	1,343,690	기타
41	105304 2022 09 1 530 041264	940225-*****	권**혁	81,350	수령인없음
42	105305 2022 09 1 550 218022	630915-*****	권**희	51,45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43	105304 2022 09 1 700 001172	120111-*****	금**중**건**(주)	701,870	기타
44	105304 2022 09 1 700 001530	120111-*****	가**개**(주)	1,861,050	기타
45	105304 2022 09 1 581 012461	550320-*****	김**갑	378,840	기타
46	105304 2022 09 1 583 025536	671215-*****	김**경	549,640	수령인없음
47	105304 2022 09 1 650 009311	500620-*****	김**경	923,550	기타
48	105305 2022 09 1 530 222350	710202-*****	김**경	50,510	수령인없음
49	105304 2022 09 1 521 030670	711010-*****	김**국	1,958,630	기타
50	105305 2022 09 1 521 208720	620208-*****	김**권	109,230	수령인없음
51	105304 2022 09 1 550 005144	410903-*****	김**규	748,050	기타
52	105304 2022 09 1 660 026482	690113-*****	김**근	435,760	기타
53	105305 2022 09 1 520 200669	730625-*****	김**근	229,430	수령인없음
54	105305 2022 09 1 581 244812	540402-*****	김**길	358,060	기타
55	105305 2022 09 1 560 319700	600807-*****	김**님	103,300	수령인없음
56	105304 2022 09 1 570 006802	460730-*****	김**덕	352,900	기타
57	105305 2022 09 1 655 307368	600303-*****	김**덕	232,460	수령인없음
58	105305 2022 09 1 581 240367	510606-*****	김**례	127,730	수령인없음
59	105305 2022 09 1 551 228940	420217-*****	김**만	478,260	기타
60	105304 2022 09 1 521 010065	520105-*****	김**미	307,620	기타
61	105304 2022 09 1 660 016519	590901-*****	김**미	997,7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2	105304 2022 09 1 510 034334	771011-*****	김**민	579,180	기타
63	105304 2022 09 1 510 039506	810407-*****	김**민	683,620	기타
64	105304 2022 09 1 560 033906	761210-*****	김**민	329,890	기타
65	105304 2022 09 1 700 040886	850808-*****	김**민	35,0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66	105304 2022 09 1 570 026862	690606-*****	김**복	77,910	수령인없음
67	105304 2022 09 1 550 007596	480103-*****	김**봉	5,650	수령인없음
68	105304 2022 09 1 522 014258	570415-*****	김**분	267,940	수령인없음
69	105304 2022 09 1 550 041793	951103-*****	김**빈	454,770	기타
70	105305 2022 09 1 510 209752	951103-*****	김**빈	110,950	수령인없음
71	105305 2022 09 1 550 216405	951103-*****	김**빈	108,570	수령인없음
72	105305 2022 09 1 570 236758	951103-*****	김**빈	93,630	수령인없음
73	105305 2022 09 1 550 219335	641205-*****	김**산	99,830	수령인없음
74	105304 2022 09 1 660 040298	891107-*****	김**석	75,500	수령인없음
75	105304 2022 09 1 550 040659	830227-*****	김**선	70,460	수령인없음
76	105304 2022 09 1 570 014306	570508-*****	김**선	418,500	기타
77	105304 2022 09 1 583 010552	520820-*****	김**선	362,790	기타
78	105304 2022 09 1 650 007431	470901-*****	김**선	461,840	기타
79	105305 2022 09 1 520 202947	631003-*****	김**선	420,430	기타
80	105305 2022 09 1 580 246612	440808-*****	김**섭	73,330	수령인없음
81	105304 2022 09 1 570 006002	440404-*****	김**수	371,020	기타
82	105304 2022 09 1 650 011169	530720-*****	김**수	7,961,960	기타
83	105304 2022 09 1 660 016046	590310-*****	김**수	605,300	기타
84	105304 2022 09 1 800 023165	650225-*****	김**수	399,6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85	105304 2022 09 1 510 010051	520101-*****	김**숙	132,660	수령인없음
86	105304 2022 09 1 700 023857	651216-*****	김**숙	3,921,370	기타
87	105304 2022 09 1 710 022252	640228-*****	김**숙	751,720	기타
88	105305 2022 09 1 520 204224	590720-*****	김**숙	385,12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89	105305 2022 09 1 655 307176	621124-*****	김**숙	311,230	기타
90	105305 2022 09 1 660 274613	520101-*****	김**숙	178,080	수령인없음
91	105305 2022 09 1 690 277672	770220-*****	김**숙	66,520	수령인없음
92	105305 2022 09 1 710 293143	700120-*****	김**숙	394,660	기타
93	105304 2022 09 1 530 007010	461225-*****	김**순	308,300	이사감
94	105304 2022 09 1 540 018126	600312-*****	김**순	321,380	기타
95	105305 2022 09 1 510 321182	650207-*****	김**순	558,540	기타
96	105305 2022 09 1 690 284475	731015-*****	김**순	247,670	수령인없음
97	105304 2022 09 1 650 016419	590728-*****	김**술	390,750	기타
98	105304 2022 09 1 650 023215	650308-*****	김**승	26,370	수령인없음
99	105304 2022 09 1 522 013617	560727-*****	김**식	677,900	기타
100	105304 2022 09 1 650 033569	760320-*****	김**연	400,110	기타
101	105304 2022 09 1 660 011189	530810-*****	김**열	204,440	수령인없음
102	105305 2022 09 1 660 274671	530810-*****	김**열	161,580	수령인없음
103	105305 2022 09 1 510 321714	580401-*****	김**엽	318,170	기타
104	105304 2022 09 1 510 035470	770716-*****	김**영	1,396,710	수령인없음
105	105305 2022 09 1 550 219488	880820-*****	김**영	157,860	수령인없음
106	105305 2022 09 1 560 252397	561226-*****	김**영	51,000	수령인없음
107	105304 2022 09 1 700 028158	690617-*****	김**예	30,600	수령인없음
108	105304 2022 09 1 650 023631	650912-*****	김**오	440,550	기타
109	105304 2022 09 1 560 017242	550327-*****	김**옥	2,231,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10	105305 2022 09 1 560 324873	550327-*****	김**옥	52,670	수령인없음
111	105304 2022 09 1 710 037570	801210-*****	김**우	667,66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112	105305 2022 09 1 510 210137	880113-*****	김**우	53,240	수령인없음
113	105304 2022 09 1 800 039619	870305-*****	김**욱	1,665,210	기타
114	105304 2022 09 1 521 042332	940206-*****	김**운	175,830	수령인없음
115	105304 2022 09 1 650 035501	770904-*****	김**은	942,470	기타
116	105304 2022 09 1 530 009074	500122-*****	김**자	99,100	수령인없음
117	105304 2022 09 1 650 009020	400720-*****	김**자	105,730	수령인없음
118	105305 2022 09 1 520 195770	540107-*****	김**자	277,270	수령인없음
119	105304 2022 09 1 580 007580	471226-*****	김**재	346,8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20	105304 2022 09 1 510 033319	751018-*****	김**정	1,348,170	기타
121	105305 2022 09 1 560 250714	810816-*****	김**정	101,340	수령인없음
122	105305 2022 09 1 570 325372	770101-*****	김**정	66,930	수령인없음
123	105305 2022 09 1 655 311986	840107-*****	김**정	238,120	수령인없음
124	105304 2022 09 1 690 021834	630830-*****	김**중	315,070	수령인없음
125	105304 2022 09 1 510 036529	730225-*****	김**진	504,900	기타
126	105304 2022 09 1 580 012759	550801-*****	김**진	2,900	수령인없음
127	105304 2022 09 1 580 030981	720304-*****	김**진	716,300	기타
128	105304 2022 09 1 583 013997	570116-*****	김**진	358,470	기타
129	105305 2022 09 1 510 212778	841002-*****	김**진	80,830	수령인없음
130	105305 2022 09 1 510 316177	841002-*****	김**진	74,480	수령인없음
131	105305 2022 09 1 521 208334	841002-*****	김**진	86,280	수령인없음
132	105305 2022 09 1 690 326136	550227-*****	김**진	318,060	수령인없음
133	105304 2022 09 1 530 038009	811224-*****	김**찬	404,440	기타
134	105304 2022 09 1 550 017887	600107-*****	김**철	414,25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135	105304 2022 09 1 655 017378	530517-*****	김**철	403,060	수령인없음
136	105304 2022 09 1 550 025345	670922-*****	김**태	32,540	수령인없음
137	105305 2022 09 1 522 213774	680727-*****	김**태	53,170	수령인없음
138	105305 2022 09 1 710 299990	580523-*****	김**하	211,950	수령인없음
139	105305 2022 09 1 530 226215	670311-*****	김**해	70,230	수령인없음
140	105304 2022 09 1 530 015196	580501-*****	김**향	1,129,210	기타
141	105304 2022 09 1 510 042023	920908-*****	김**현	190,040	수령인없음
142	105304 2022 09 1 551 023249	650316-*****	김**현	460,790	기타
143	105304 2022 09 1 650 003562	282004-*****	김**현	5,910	수령인없음
144	105305 2022 09 1 510 212024	920908-*****	김**현	77,660	수령인없음
145	105305 2022 09 1 510 213046	920908-*****	김**현	69,200	수령인없음
146	105305 2022 09 1 521 208904	920908-*****	김**현	55,930	수령인없음
147	105305 2022 09 1 582 248097	920908-*****	김**현	72,430	수령인없음
148	105305 2022 09 1 690 285032	920807-*****	김**형	336,760	기타
149	105304 2022 09 1 521 011533	540210-*****	김**호	415,020	기타
150	105304 2022 09 1 540 004296	371005-*****	김**호	393,340	기타
151	105305 2022 09 1 551 221418	640518-*****	김**호	112,010	수령인없음
152	105304 2022 09 1 650 031544	721218-*****	김**홍	652,210	기타
153	105304 2022 09 1 560 020170	620202-*****	김**화	1,927,800	기타
154	105304 2022 09 1 660 018312	600515-*****	김**화	307,240	수령인없음
155	105305 2022 09 1 660 325720	620202-*****	김**화	314,330	기타
156	105305 2022 09 1 690 283575	660118-*****	김**화	171,770	수령인없음
157	105304 2022 09 1 550 017669	571115-*****	김**환	9,9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158	105304 2022 09 1 583 023040	650115-*****	김**환	3,142,540	기타
159	105304 2022 09 1 520 031332	720902-*****	김**흥	1,107,560	수령인없음
160	105304 2022 09 1 510 034571	780409-*****	김**희	1,107,440	기타
161	105304 2022 09 1 550 017225	540818-*****	김**희	9,900	수령인없음
162	105304 2022 09 1 550 017668	560116-*****	김**희	9,900	수령인없음
163	105304 2022 09 1 551 022144	640128-*****	김**희	75,060	수령인없음
164	105304 2022 09 1 650 006620	460211-*****	김**희	319,810	수령인없음
165	105304 2022 09 1 800 024173	660413-*****	김**희	8,999,420	기타
166	105305 2022 09 1 521 208857	830422-*****	김**희	97,840	수령인없음
167	105305 2022 09 1 530 225099	680121-*****	김**희	88,640	수령인없음
168	105305 2022 09 1 655 310032	601223-*****	김**희	331,520	수령인없음
169	105305 2022 09 1 690 284053	660918-*****	김**희	124,030	수령인없음
170	105304 2022 09 1 522 040511	880226-*****	나**일	3,125,760	기타
171	105305 2022 09 1 710 297600	610408-*****	나**환	408,010	기타
172	105305 2022 09 1 650 266964	721117-*****	나**희	337,370	수령인없음
173	105305 2022 09 1 520 305307	670203-*****	남**	105,000	수령인없음
174	105304 2022 09 1 660 012603	550520-*****	남**만	5,716,390	기타
175	105304 2022 09 1 660 012596	550517-*****	남**운	431,170	기타
176	105304 2022 09 1 522 007046	470109-*****	남**화	319,410	기타
177	105304 2022 09 1 510 021691	630628-*****	노**녀	1,645,920	이사감
178	105305 2022 09 1 710 297152	800411-*****	노**웅	310,770	기타
179	105304 2022 09 1 660 002573	120111-*****	농**회**법** **식**사**션**	522,710	수령인없음
180	105305 2022 09 1 550 229656	111610-*****	담**야**사**나**키** 사**	132,26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181	105304 2022 09 1 690 003389	231540-*****	대**예**교**로**영** 교**	427,980	기타
182	105305 2022 09 1 690 291059	231540-*****	대**예**교**로**영** 교**	270,420	수령인없음
183	105304 2022 09 1 510 003779	231840-*****	대**예**교**로**인** 광**교**	748,600	이사감
184	105304 2022 09 1 522 003353	231540-*****	대**예**교**로**평** 교**	729,9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85	105304 2022 09 1 530 003401	231540-*****	대**예**교**로**행** 으**가**교**	388,620	기타
186	105304 2022 09 1 560 013468	560512-*****	데**빛**김	2,353,400	기타
187	105304 2022 09 1 690 001307	120111-*****	동**이**씨(주)	462,860	기타
188	105304 2022 09 1 700 000694	120111-*****	동**익**프**스	68,130	수령인없음
189	105304 2022 09 1 570 003097	110111-*****	두**이**터**(주)	1,920,140	기타
190	105304 2022 09 1 655 003242	200111-*****	리**에**주**회**	3,679,540	이사감
191	105304 2022 09 1 520 020163	620201-*****	맹**호	205,550	수령인없음
192	105304 2022 09 1 650 029388	700311-*****	문**	500,700	기타
193	105304 2022 09 1 522 009682	510312-*****	문**덕	602,160	기타
194	105304 2022 09 1 540 004381	380415-*****	문**복	426,860	기타
195	105305 2022 09 1 510 212843	670102-*****	문**선	50,610	수령인없음
196	105305 2022 09 1 522 214568	670102-*****	문**선	65,460	수령인없음
197	105304 2022 09 1 522 006919	461014-*****	문**순	721,440	기타
198	105305 2022 09 1 510 211784	810815-*****	문**식	67,170	수령인없음
199	105305 2022 09 1 650 271406	650125-*****	문**정	357,010	기타
200	105304 2022 09 1 660 008382	490514-*****	문**호	133,620	수령인없음
201	105304 2022 09 1 551 002306	160111-*****	미**도**이**일(주)	69,180	수령인없음
202	105305 2022 09 1 551 234282	690108-*****	박**규	323,450	기타
203	105304 2022 09 1 570 038410	830217-*****	박**근	39,31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04	105305 2022 09 1 521 208913	600101-*****	박**길	319,530	수령인없음
205	105304 2022 09 1 650 003577	282004-*****	박**남	2,820	수령인없음
206	105304 2022 09 1 660 010310	520502-*****	박**남	3,430,430	기타
207	105304 2022 09 1 690 023202	650305-*****	박**리	109,890	수령인없음
208	105305 2022 09 1 540 302036	650305-*****	박**리	176,470	수령인없음
209	105305 2022 09 1 510 329477	930426-*****	박**민	596,740	기타
210	105305 2022 09 1 650 268135	361203-*****	박**봉	93,070	수령인없음
211	105304 2022 09 1 521 030398	710530-*****	박**빈	131,790	수령인없음
212	105305 2022 09 1 510 205586	611119-*****	박**서	137,940	수령인없음
213	105305 2022 09 1 690 277054	630623-*****	박**선	301,560	기타
214	105304 2022 09 1 550 005941	440129-*****	박**섭	3,684,370	이사감
215	105304 2022 09 1 540 010420	520616-*****	박**성	315,800	기타
216	105304 2022 09 1 660 013210	560201-*****	박**수	6,699,050	기타
217	105304 2022 09 1 510 033933	761226-*****	박**숙	1,297,640	기타
218	105304 2022 09 1 521 011953	540825-*****	박**숙	619,220	기타
219	105305 2022 09 1 510 209439	761226-*****	박**숙	74,040	수령인없음
220	105305 2022 09 1 510 209709	761226-*****	박**숙	110,640	수령인없음
221	105305 2022 09 1 520 202724	620226-*****	박**숙	309,670	수령인없음
222	105305 2022 09 1 521 215059	761226-*****	박**숙	103,290	수령인없음
223	105305 2022 09 1 550 215749	761226-*****	박**숙	119,330	수령인없음
224	105305 2022 09 1 550 216540	761226-*****	박**숙	75,350	수령인없음
225	105305 2022 09 1 550 217770	761226-*****	박**숙	83,270	수령인없음
226	105305 2022 09 1 550 217803	761226-*****	박**숙	110,36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27	105305 2022 09 1 550 229631	761226-*****	박**숙	68,030	수령인없음
228	105305 2022 09 1 570 237480	560320-*****	박**숙	58,140	수령인없음
229	105305 2022 09 1 580 245327	761226-*****	박**숙	53,270	수령인없음
230	105305 2022 09 1 580 245556	761226-*****	박**숙	65,280	수령인없음
231	105305 2022 09 1 580 322985	761226-*****	박**숙	63,650	수령인없음
232	105305 2022 09 1 580 322989	761226-*****	박**숙	55,850	수령인없음
233	105305 2022 09 1 583 253321	761226-*****	박**숙	80,480	수령인없음
234	105305 2022 09 1 583 259999	761226-*****	박**숙	52,040	수령인없음
235	105304 2022 09 1 522 007386	470812-*****	박**순	333,5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36	105304 2022 09 1 522 011671	540415-*****	박**순	362,4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37	105304 2022 09 1 550 028229	650519-*****	박**순	63,710	수령인없음
238	105305 2022 09 1 522 214459	470812-*****	박**순	91,490	수령인없음
239	105304 2022 09 1 540 012079	541025-*****	박**식	318,480	기타
240	105305 2022 09 1 580 262356	580610-*****	박**애	99,010	기타
241	105305 2022 09 1 710 298061	610922-*****	박**애	518,950	수령인없음
242	105305 2022 09 1 510 326817	640908-*****	박**연	354,580	이사감
243	105305 2022 09 1 510 210622	830510-*****	박**영	69,920	수령인없음
244	105305 2022 09 1 521 215107	611006-*****	박**영	141,200	수령인없음
245	105305 2022 09 1 710 294802	830510-*****	박**영	105,840	수령인없음
246	105304 2022 09 1 550 017377	570318-*****	박**오	677,610	기타
247	105304 2022 09 1 660 012493	550327-*****	박**옥	204,440	수령인없음
248	105304 2022 09 1 800 010009	511208-*****	박**옥	6,794,970	기타
249	105305 2022 09 1 660 274672	550327-*****	박**옥	161,58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50	105305 2022 09 1 700 277892	561007-*****	박**옥	332,080	수령인없음
251	105304 2022 09 1 650 003497	280920-*****	박**원	67,390	수령인없음
252	105305 2022 09 1 510 210374	621009-*****	박**자	96,520	수령인없음
253	105305 2022 09 1 510 327955	590401-*****	박**자	187,350	수령인없음
254	105304 2022 09 1 540 020309	620308-*****	박**재	350,900	기타
255	105305 2022 09 1 710 297003	800626-*****	박**주	263,240	수령인없음
256	105305 2022 09 1 530 232199	881007-*****	박**진	54,060	수령인없음
257	105305 2022 09 1 655 310209	811220-*****	박**진	358,330	수령인없음
258	105305 2022 09 1 650 267603	800527-*****	박**찬	74,400	수령인없음
259	105304 2022 09 1 660 038102	820225-*****	박**철	6,261,500	기타
260	105304 2022 09 1 551 005073	410512-*****	박**춘	556,240	기타
261	105305 2022 09 1 550 219319	540102-*****	박**현	102,710	수령인없음
262	105305 2022 09 1 690 326149	530405-*****	박**현	566,760	기타
263	105305 2022 09 1 570 236707	720329-*****	박**호	60,910	수령인없음
264	105305 2022 09 1 582 247620	720329-*****	박**호	59,830	수령인없음
265	105305 2022 09 1 655 310226	600819-*****	박**호	348,170	수령인없음
266	105304 2022 09 1 551 032367	740213-*****	박**환	788,750	기타
267	105304 2022 09 1 560 021291	630213-*****	박**희	983,630	기타
268	105304 2022 09 1 700 005500	420926-*****	박**희	68,130	수령인없음
269	105305 2022 09 1 710 299120	700516-*****	박**희	341,150	수령인없음
270	105304 2022 09 1 520 009533	501206-*****	방**숙	342,600	수령인없음
271	105305 2022 09 1 530 222831	840822-*****	방**영	51,700	수령인없음
272	105305 2022 09 1 550 216217	001122-*****	배**	62,33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73	105305 2022 09 1 690 288288	750427-*****	배**규	315,760	기타
274	105304 2022 09 1 650 017207	511028-*****	배**자	309,460	수령인없음
275	105304 2022 09 1 710 022313	640318-*****	백**기	1,781,3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76	105305 2022 09 1 690 326031	830718-*****	백**준	359,970	기타
277	105304 2022 09 1 580 015944	590205-*****	백**호	1,560,660	수령인없음
278	105304 2022 09 1 560 012140	541124-*****	베**덕**김	2,353,400	기타
279	105304 2022 09 1 551 032895	750110-*****	변**녀	140,150	수령인없음
280	105305 2022 09 1 520 200139	630123-*****	변**량	226,290	수령인없음
281	105305 2022 09 1 510 209468	600205-*****	변**섭	67,530	수령인없음
282	105305 2022 09 1 510 209479	600205-*****	변**섭	61,820	수령인없음
283	105305 2022 09 1 510 209688	600205-*****	변**섭	51,160	수령인없음
284	105305 2022 09 1 510 210720	600205-*****	변**섭	51,550	수령인없음
285	105305 2022 09 1 550 216970	600205-*****	변**섭	84,480	수령인없음
286	105305 2022 09 1 550 216971	600205-*****	변**섭	84,480	수령인없음
287	105305 2022 09 1 550 220502	600205-*****	변**섭	74,210	수령인없음
288	105305 2022 09 1 551 220433	600205-*****	변**섭	52,820	수령인없음
289	105305 2022 09 1 551 220480	600205-*****	변**섭	70,740	수령인없음
290	105305 2022 09 1 551 220481	600205-*****	변**섭	70,740	수령인없음
291	105305 2022 09 1 580 245454	600205-*****	변**섭	76,090	수령인없음
292	105304 2022 09 1 560 014603	570916-*****	브**이**호**	4,167,960	기타
293	105304 2022 09 1 700 000633	115021-*****	사**법**한**청**년** 맹	96,920	수령인없음
294	105305 2022 09 1 655 310362	970421-*****	서**덕	190,040	수령인없음
295	105304 2022 09 1 540 032942	750204-*****	서**석	315,3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296	105304 2022 09 1 650 013904	561216-*****	서**성	489,000	수령인없음
297	105304 2022 09 1 800 027533	681010-*****	서**숙	2,055,960	기타
298	105304 2022 09 1 540 006622	460212-*****	서**영	362,050	기타
299	105305 2022 09 1 583 254958	470130-*****	서**자	221,370	수령인없음
300	105304 2022 09 1 510 038897	850321-*****	설**호	122,930	수령인없음
301	105304 2022 09 1 800 002887	120111-*****	세**스** **식**사	294,420	수령인없음
302	105304 2022 09 1 660 015515	580918-*****	손**만	1,102,420	기타
303	105305 2022 09 1 550 219566	800408-*****	손**식	82,410	수령인없음
304	105305 2022 09 1 650 270978	550125-*****	손**웅	361,140	기타
305	105304 2022 09 1 510 042263	920305-*****	손**현	242,400	수령인없음
306	105305 2022 09 1 551 220222	920305-*****	손**현	79,420	수령인없음
307	105305 2022 09 1 551 220469	920305-*****	손**현	76,650	수령인없음
308	105305 2022 09 1 582 247973	920305-*****	손**현	64,070	수령인없음
309	105305 2022 09 1 650 267508	920305-*****	손**현	56,210	수령인없음
310	105304 2022 09 1 583 003162	120111-*****	솔**농**회**법**주** 회**	817,180	기타
311	105304 2022 09 1 660 003685	282004-*****	송**만	3,080	수령인없음
312	105304 2022 09 1 510 012460	550320-*****	송**석	1,402,4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13	105304 2022 09 1 550 040914	830721-*****	송**석	54,850	수령인없음
314	105304 2022 09 1 510 036743	740708-*****	송**수	133,280	수령인없음
315	105305 2022 09 1 510 212397	740708-*****	송**수	57,070	수령인없음
316	105304 2022 09 1 530 023397	650519-*****	송**식	11,225,220	기타
317	105304 2022 09 1 660 003681	282004-*****	송**식	3,080	수령인없음
318	105304 2022 09 1 530 041516	900507-*****	송**억	346,99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319	105304 2022 09 1 660 003686	282004-*****	송**옥	3,080	수령인없음
320	105304 2022 09 1 660 003682	282004-*****	송**용	21,080	수령인없음
321	105304 2022 09 1 510 039909	890416-*****	송**이	53,810	수령인없음
322	105304 2022 09 1 660 006037	440502-*****	송**창	115,630	수령인없음
323	105305 2022 09 1 710 298744	550306-*****	송**현	420,470	기타
324	105304 2022 09 1 650 003143	110111-*****	신**기** **식**사	1,237,760	수령인없음
325	105304 2022 09 1 522 011586	540305-*****	신**길	331,6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26	105304 2022 09 1 660 020121	620118-*****	신**섭	329,2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27	105304 2022 09 1 660 017064	590828-*****	신**숙	4,060,870	기타
328	105304 2022 09 1 650 013790	561015-*****	신**용	3,043,270	수령인없음
329	105304 2022 09 1 560 003498	281024-*****	신**우	3,665,930	기타
330	105304 2022 09 1 510 009579	510107-*****	신**임	83,530	수령인없음
331	105304 2022 09 1 583 000259	110111-*****	신**중**건**(주)	59,730	수령인없음
332	105304 2022 09 1 800 001824	120111-*****	신**케**칼(주)	694,800	수령인없음
333	105305 2022 09 1 551 228909	811118-*****	신**혁	66,670	수령인없음
334	105304 2022 09 1 551 039179	861220-*****	신**훈	11,220,3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35	105304 2022 09 1 522 005880	431127-*****	심**년	636,650	기타
336	105304 2022 09 1 521 011600	540308-*****	심**순	335,990	기타
337	105305 2022 09 1 583 255034	960824-*****	심**연	183,100	수령인없음
338	105304 2022 09 1 550 026320	681101-*****	심**형	541,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39	105304 2022 09 1 650 031035	720402-*****	심**희	1,330,950	기타
340	105305 2022 09 1 700 278363	580723-*****	안**수	115,960	수령인없음
341	105304 2022 09 1 522 020142	620125-*****	안**순	289,34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342	105305 2022 09 1 710 299118	650730-*****	안**순	630,690	수령인없음
343	105304 2022 09 1 510 024057	660301-*****	안**준	65,100	수령인없음
344	105305 2022 09 1 650 267487	001225-*****	안**훈	82,240	수령인없음
345	105305 2022 09 1 690 281140	640410-*****	양**만	101,950	수령인없음
346	105304 2022 09 1 690 034378	771111-*****	양**선	136,620	수령인없음
347	105305 2022 09 1 510 327266	710508-*****	양**섭	354,580	수령인없음
348	105304 2022 09 1 650 029143	600505-*****	양**숙	709,960	기타
349	105305 2022 09 1 522 208107	631201-*****	양**순	53,020	수령인없음
350	105305 2022 09 1 710 298974	770103-*****	양**영	373,630	기타
351	105304 2022 09 1 660 009948	511017-*****	양**옥	894,390	기타
352	105305 2022 09 1 520 197616	610120-*****	양**원	351,470	기타
353	105304 2022 09 1 650 003593	282004-*****	양**인	84,360	수령인없음
354	105304 2022 09 1 582 005466	420820-*****	양**화	706,3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55	105304 2022 09 1 520 013427	560425-*****	양**희	209,150	수령인없음
356	105304 2022 09 1 510 018811	601110-*****	엄**경	408,640	기타
357	105304 2022 09 1 510 033671	760601-*****	엄**석	98,820	수령인없음
358	105305 2022 09 1 550 216528	981113-*****	엄**정	97,900	수령인없음
359	105304 2022 09 1 551 000185	110111-*****	에**치**건**(주)	452,330	기타
360	105304 2022 09 1 540 019123	610206-*****	여**애	543,380	기타
361	105304 2022 09 1 660 024749	670109-*****	여**주	333,330	기타
362	105304 2022 09 1 650 012496	550327-*****	영**김**	1,461,140	기타
363	105304 2022 09 1 560 018146	600316-*****	영**백	4,167,960	기타
364	105304 2022 09 1 710 002365	120111-*****	영**이**지(주)	1,838,41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365	105304 2022 09 1 522 017888	600107-*****	예**환	515,860	기타
366	105305 2022 09 1 530 222808	650403-*****	오**문	76,630	수령인없음
367	105304 2022 09 1 540 026465	690105-*****	오**미	93,110	수령인없음
368	105305 2022 09 1 520 199902	680101-*****	오**미	350,080	기타
369	105304 2022 09 1 710 013942	561227-*****	오**숙	643,060	수령인없음
370	105305 2022 09 1 510 326776	630425-*****	오**식	378,160	기타
371	105305 2022 09 1 550 229691	580803-*****	오**진	52,160	수령인없음
372	105304 2022 09 1 570 021196	630120-*****	오**현	462,940	수령인없음
373	105304 2022 09 1 660 028141	661120-*****	오**현	3,910	수령인없음
374	105304 2022 09 1 660 028142	690131-*****	오**희	3,910	수령인없음
375	105304 2022 09 1 510 019701	610810-*****	우**길	753,410	기타
376	105304 2022 09 1 570 000653	120111-*****	원**	175,970	수령인없음
377	105304 2022 09 1 650 003570	282004-*****	원**순	2,850	수령인없음
378	105304 2022 09 1 510 018460	600712-*****	원**자	4,668,980	수령인없음
379	105304 2022 09 1 551 000708	120111-*****	원**중**건**(주)	1,555,420	기타
380	105304 2022 09 1 582 005865	431108-*****	유**득	8,225,520	기타
381	105305 2022 09 1 700 325947	400205-*****	유**례	441,650	수령인없음
382	105305 2022 09 1 510 210431	851128-*****	유**성	112,220	수령인없음
383	105305 2022 09 1 521 208993	851128-*****	유**성	73,090	수령인없음
384	105305 2022 09 1 550 215727	851128-*****	유**성	57,570	수령인없음
385	105305 2022 09 1 550 217066	851128-*****	유**성	81,920	수령인없음
386	105305 2022 09 1 550 217416	851128-*****	유**성	66,040	수령인없음
387	105305 2022 09 1 570 247185	851128-*****	유**성	75,2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388	105305 2022 09 1 580 245477	851128-*****	유**성	65,960	수령인없음
389	105304 2022 09 1 690 011208	530816-*****	유**수	375,990	기타
390	105304 2022 09 1 580 005288	420210-*****	유**영	640,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91	105305 2022 09 1 581 240141	591103-*****	유**은	121,340	수령인없음
392	105305 2022 09 1 522 214569	651004-*****	유**이	60,250	수령인없음
393	105305 2022 09 1 530 222857	771129-*****	유**재	103,940	수령인없음
394	105304 2022 09 1 510 019608	610705-*****	유**주	691,260	기타
395	105304 2022 09 1 700 037761	810512-*****	유**현	316,980	기타
396	105304 2022 09 1 522 037519	801024-*****	유**화	604,840	기타
397	105305 2022 09 1 522 329501	134214-*****	유**회** **티**	67,330	수령인없음
398	105305 2022 09 1 560 252805	200114-*****	유**회**드**곤	81,540	수령인없음
399	105304 2022 09 1 510 028878	620827-*****	유**희	762,300	기타
400	105304 2022 09 1 660 003698	282004-*****	윤**길	30,270	수령인없음
401	105304 2022 09 1 660 003701	282004-*****	윤**길	6,790	수령인없음
402	105304 2022 09 1 700 004303	371025-*****	윤**노	49,880	수령인없음
403	105305 2022 09 1 710 299675	710519-*****	윤**라	408,080	수령인없음
404	105304 2022 09 1 550 041394	931123-*****	윤**빈	21,958,010	기타
405	105305 2022 09 1 520 205147	931123-*****	윤**빈	363,710	기타
406	105304 2022 09 1 650 035441	790511-*****	윤**삼	605,830	기타
407	105304 2022 09 1 510 032140	731103-*****	윤**섭	530,520	기타
408	105305 2022 09 1 510 205492	731103-*****	윤**섭	67,380	수령인없음
409	105305 2022 09 1 540 303740	810919-*****	윤**성	363,210	기타
410	105305 2022 09 1 540 235327	560226-*****	윤**숙	345,36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411	105304 2022 09 1 582 011516	540130-*****	윤**순	701,060	기타
412	105304 2022 09 1 710 026755	690416-*****	윤**영	447,150	수령인없음
413	105305 2022 09 1 655 312126	681207-*****	윤**이	330,510	기타
414	105304 2022 09 1 570 013082	551221-*****	윤**자	14,520	수령인없음
415	105305 2022 09 1 581 241684	560217-*****	윤**화	62,240	수령인없음
416	105304 2022 09 1 700 000854	120111-*****	윤**화**주**회**	68,130	수령인없음
417	105305 2022 09 1 540 236372	700824-*****	이**건	320,700	수령인없음
418	105305 2022 09 1 510 328354	811005-*****	이**경	374,730	기타
419	105305 2022 09 1 520 196898	660416-*****	이**경	306,840	기타
420	105304 2022 09 1 540 009668	510307-*****	이**구	320,700	기타
421	105304 2022 09 1 550 031599	730114-*****	이**근	4,719,240	기타
422	105304 2022 09 1 650 007765	480406-*****	이**근	10,320	수령인없음
423	105305 2022 09 1 581 244813	610830-*****	이**금	358,060	기타
424	105305 2022 09 1 520 197144	580309-*****	이**기	303,390	기타
425	105305 2022 09 1 560 249951	700829-*****	이**남	69,770	수령인없음
426	105305 2022 09 1 583 259919	700829-*****	이**남	64,640	수령인없음
427	105305 2022 09 1 710 316365	861029-*****	이**두	348,440	기타
428	105305 2022 09 1 690 288410	670515-*****	이**락	721,640	기타
429	105304 2022 09 1 700 015796	581215-*****	이**란	588,240	수령인없음
430	105304 2022 09 1 700 004790	400202-*****	이**렬	735,150	기타
431	105305 2022 09 1 700 326262	400202-*****	이**렬	426,050	기타
432	105305 2022 09 1 650 271246	790915-*****	이**령	360,360	기타
433	105305 2022 09 1 560 250361	530507-*****	이**례	70,2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434	105304 2022 09 1 550 042339	900913-*****	이**름	316,100	수령인없음
435	105305 2022 09 1 522 214156	591015-*****	이**무	63,900	수령인없음
436	105305 2022 09 1 560 249667	591015-*****	이**무	61,030	수령인없음
437	105305 2022 09 1 583 259455	591015-*****	이**무	65,860	수령인없음
438	105304 2022 09 1 650 016445	590806-*****	이**문	475,150	기타
439	105305 2022 09 1 710 298398	710401-*****	이**미	378,940	기타
440	105304 2022 09 1 510 029160	640609-*****	이**민	56,460	수령인없음
441	105305 2022 09 1 710 297633	750602-*****	이**민	336,960	기타
442	105304 2022 09 1 540 006252	450129-*****	이**범	847,300	기타
443	105304 2022 09 1 800 024596	661101-*****	이**복	5,996,980	기타
444	105305 2022 09 1 520 196913	780227-*****	이**선	342,970	기타
445	105305 2022 09 1 550 219576	970703-*****	이**섭	84,150	수령인없음
446	105304 2022 09 1 510 026547	690129-*****	이**성	342,160	기타
447	105304 2022 09 1 570 040729	880907-*****	이**성	448,840	수령인없음
448	105304 2022 09 1 650 003596	282004-*****	이**성	13,920	수령인없음
449	105305 2022 09 1 551 223072	670929-*****	이**성	57,300	수령인없음
450	105304 2022 09 1 530 041171	910824-*****	이**수	163,130	수령인없음
451	105304 2022 09 1 581 005351	420411-*****	이**수	5,162,960	기타
452	105305 2022 09 1 530 223874	910824-*****	이**수	53,870	수령인없음
453	105305 2022 09 1 580 246085	600415-*****	이**수	106,770	수령인없음
454	105304 2022 09 1 650 003643	282004-*****	이**순	12,500	수령인없음
455	105305 2022 09 1 510 212323	601124-*****	이**순	564,040	기타
456	105304 2022 09 1 660 024712	661222-*****	이**술	455,55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457	105305 2022 09 1 660 273843	661222-*****	이**술	308,650	기타
458	105305 2022 09 1 530 324524	560517-*****	이**식	411,320	기타
459	105304 2022 09 1 650 016462	590812-*****	이**앙	493,760	기타
460	105304 2022 09 1 560 020437	620505-*****	이**애	460,700	기타
461	105304 2022 09 1 521 004091	350822-*****	이**연	414,220	기타
462	105304 2022 09 1 521 039178	861214-*****	이**영	412,870	기타
463	105304 2022 09 1 710 023773	651114-*****	이**영	2,025,280	기타
464	105305 2022 09 1 510 210392	780701-*****	이**영	52,270	수령인없음
465	105305 2022 09 1 530 223991	721012-*****	이**영	58,450	수령인없음
466	105305 2022 09 1 550 218690	570620-*****	이**영	140,870	수령인없음
467	105305 2022 09 1 581 244720	900621-*****	이**영	85,060	수령인없음
468	105304 2022 09 1 700 012111	541111-*****	이**옥	489,290	기타
469	105305 2022 09 1 550 219296	890213-*****	이**용	58,400	수령인없음
470	105304 2022 09 1 550 005513	421011-*****	이**우	2,002,530	기타
471	105304 2022 09 1 550 041683	920212-*****	이**우	496,030	수령인없음
472	105305 2022 09 1 550 233236	640715-*****	이**우	54,820	수령인없음
473	105305 2022 09 1 550 233237	640715-*****	이**우	71,110	수령인없음
474	105304 2022 09 1 710 025199	670715-*****	이**옥	1,886,460	수령인없음
475	105305 2022 09 1 510 209537	990818-*****	이**운	60,470	수령인없음
476	105304 2022 09 1 700 041874	910926-*****	이**원	412,490	기타
477	105305 2022 09 1 521 208329	920605-*****	이**윤	62,030	수령인없음
478	105304 2022 09 1 521 019107	610202-*****	이**인	355,460	기타
479	105304 2022 09 1 521 005029	410224-*****	이**자	621,0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480	105304 2022 09 1 540 020215	620213-*****	이**자	366,890	기타
481	105305 2022 09 1 551 221485	600816-*****	이**자	52,950	수령인없음
482	105304 2022 09 1 530 024027	660218-*****	이**재	584,360	기타
483	105304 2022 09 1 551 024281	660602-*****	이**재	1,269,430	기타
484	105304 2022 09 1 700 039385	881115-*****	이**재	1,897,780	수령인없음
485	105304 2022 09 1 583 037504	801009-*****	이**준	327,410	수령인없음
486	105304 2022 09 1 800 032855	741222-*****	이**준	370,810	수령인없음
487	105305 2022 09 1 660 274858	940513-*****	이**진	66,780	수령인없음
488	105304 2022 09 1 530 036620	700107-*****	이**창	5,945,650	기타
489	105305 2022 09 1 710 317299	530623-*****	이**천	155,860	수령인없음
490	105305 2022 09 1 551 230165	551005-*****	이**춘	185,300	수령인없음
491	105305 2022 09 1 570 238055	631128-*****	이**필	109,880	수령인없음
492	105304 2022 09 1 540 012294	550202-*****	이**학	343,620	기타
493	105304 2022 09 1 660 030588	710827-*****	이**혁	449,520	기타
494	105304 2022 09 1 510 038001	811220-*****	이**형	1,606,200	기타
495	105304 2022 09 1 530 041823	951115-*****	이**호	163,130	수령인없음
496	105304 2022 09 1 570 003552	282004-*****	이**호	400,470	기타
497	105304 2022 09 1 660 006504	451008-*****	이**호	336,190	기타
498	105305 2022 09 1 530 223875	951115-*****	이**호	53,870	수령인없음
499	105305 2022 09 1 650 271524	720920-*****	이**호	51,950	수령인없음
500	105305 2022 09 1 700 289247	741015-*****	이**호	316,960	기타
501	105304 2022 09 1 540 005693	430312-*****	이**화	1,211,140	기타
502	105305 2022 09 1 520 197039	690715-*****	이**화	337,420	기타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503	105305 2022 09 1 530 223993	450519-*****	이**화	58,450	수령인없음
504	105304 2022 09 1 700 040499	840818-*****	이**환	84,420	수령인없음
505	105305 2022 09 1 510 322294	840818-*****	이**환	54,940	수령인없음
506	105304 2022 09 1 522 039250	870623-*****	이**후	780,520	기타
507	105304 2022 09 1 521 040565	881030-*****	이**훈	377,370	수령인없음
508	105305 2022 09 1 540 236394	450420-*****	이**휘	320,700	수령인없음
509	105304 2022 09 1 660 017786	570117-*****	이**희	5,720	수령인없음
510	105305 2022 09 1 582 249398	740310-*****	이**희	139,040	수령인없음
511	105304 2022 09 1 560 003776	231501-*****	인**만**역**역**택** 합	1,666,370	기타
512	105305 2022 09 1 510 212349	680601-*****	임**규	85,440	수령인없음
513	105305 2022 09 1 690 288163	771201-*****	임**규	355,690	기타
514	105304 2022 09 1 582 033646	760516-*****	임**선	708,660	기타
515	105304 2022 09 1 550 031155	720603-*****	임**수	565,960	기타
516	105305 2022 09 1 520 199614	631203-*****	임**숙	354,850	기타
517	105305 2022 09 1 710 297918	620315-*****	임**숙	647,670	수령인없음
518	105304 2022 09 1 560 011896	540804-*****	임**영	796,100	기타
519	105304 2022 09 1 521 013774	561008-*****	임**옥	1,335,540	기타
520	105305 2022 09 1 710 316792	661128-*****	임**운	310,790	수령인없음
521	105305 2022 09 1 510 210535	970101-*****	임**진	104,660	수령인없음
522	105305 2022 09 1 570 236784	610910-*****	임**진	69,610	수령인없음
523	105305 2022 09 1 570 238466	610910-*****	임**진	50,590	수령인없음
524	105304 2022 09 1 521 013545	560628-*****	임**택	302,120	기타
525	105305 2022 09 1 690 285368	651025-*****	장**경	173,34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526	105304 2022 09 1 550 003521	282004-*****	장**관	16,710	수령인없음
527	105304 2022 09 1 551 008214	490201-*****	장**기	3,885,1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28	105305 2022 09 1 690 288192	551219-*****	장**순	410,790	수령인없음
529	105305 2022 09 1 510 212380	920419-*****	장**오	56,480	수령인없음
530	105305 2022 09 1 530 222822	891207-*****	장**일	54,510	수령인없음
531	105304 2022 09 1 551 013841	561115-*****	장**조	19,230	수령인없음
532	105304 2022 09 1 530 040489	870106-*****	장**진	1,450,190	기타
533	105304 2022 09 1 690 005815	430903-*****	장**진	367,710	기타
534	105304 2022 09 1 650 003274	230607-*****	장**철	26,360	수령인없음
535	105304 2022 09 1 700 037687	810302-*****	장**철	317,320	기타
536	105304 2022 09 1 800 040415	870223-*****	장**호	28,240	수령인없음
537	105305 2022 09 1 570 236763	660707-*****	장**호	70,530	수령인없음
538	105305 2022 09 1 583 256803	590405-*****	전**식	70,910	수령인없음
539	105304 2022 09 1 522 032253	731225-*****	정**	614,770	기타
540	105304 2022 09 1 660 003680	282004-*****	정**룡	3,280	수령인없음
541	105305 2022 09 1 710 292872	480209-*****	정**모	372,900	기타
542	105305 2022 09 1 650 270136	551125-*****	정**석	173,020	수령인없음
543	105304 2022 09 1 582 024625	661116-*****	정**선	607,910	수령인없음
544	105304 2022 09 1 660 003677	282004-*****	정**성	3,280	수령인없음
545	105304 2022 09 1 510 014133	570228-*****	정**숙	489,210	기타
546	105304 2022 09 1 510 022833	641022-*****	정**숙	389,180	기타
547	105304 2022 09 1 700 004239	370325-*****	정**숙	49,880	수령인없음
548	105305 2022 09 1 510 212344	681008-*****	정**식	66,97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549	105304 2022 09 1 650 013083	551221-*****	정**아	566,250	기타
550	105304 2022 09 1 660 003678	282004-*****	정**양	3,280	수령인없음
551	105304 2022 09 1 690 038165	820504-*****	정**연	368,750	기타
552	105304 2022 09 1 540 004682	391129-*****	정**여	543,380	기타
553	105304 2022 09 1 581 003741	290222-*****	정**연	756,810	수령인없음
554	105304 2022 09 1 540 010901	530305-*****	정**영	330,010	수령인없음
555	105305 2022 09 1 710 317310	700818-*****	정**영	200,950	수령인없음
556	105305 2022 09 1 655 310124	621120-*****	정**원	362,440	기타
557	105304 2022 09 1 660 003675	282004-*****	정**인	3,280	수령인없음
558	105304 2022 09 1 540 020290	620301-*****	정**임	350,900	기타
559	105305 2022 09 1 530 222457	730107-*****	정**철	115,510	수령인없음
560	105305 2022 09 1 530 222463	730107-*****	정**철	117,540	수령인없음
561	105305 2022 09 1 550 218131	730107-*****	정**철	62,040	수령인없음
562	105305 2022 09 1 550 218522	730107-*****	정**철	95,830	수령인없음
563	105305 2022 09 1 581 240478	830801-*****	정**철	77,100	수령인없음
564	105304 2022 09 1 510 009634	510217-*****	정**태	104,960	수령인없음
565	105304 2022 09 1 550 013429	560427-*****	정**태	311,790	기타
566	105305 2022 09 1 520 198467	940624-*****	정**현	287,460	수령인없음
567	105304 2022 09 1 510 022795	641003-*****	정**호	280,940	수령인없음
568	105305 2022 09 1 520 203932	500220-*****	정**희	300,090	수령인없음
569	105304 2022 09 1 800 002707	120111-*****	제**에**치**	379,480	기타
570	105304 2022 09 1 551 000655	120111-*****	제**화**공**(주)	15,770	수령인없음
571	105304 2022 09 1 551 019451	610512-*****	조**구	18,31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572	105305 2022 09 1 530 222784	560607-*****	조**복	55,960	수령인없음
573	105304 2022 09 1 521 009143	500303-*****	조**석	425,790	기타
574	105305 2022 09 1 510 211520	871006-*****	조**선	63,890	수령인없음
575	105304 2022 09 1 550 020981	621113-*****	조**수	2,610	수령인없음
576	105305 2022 09 1 520 213486	670708-*****	조**순	67,220	수령인없음
577	105304 2022 09 1 510 024839	670210-*****	조**식	243,240	수령인없음
578	105305 2022 09 1 700 279898	920121-*****	조**해	89,430	수령인없음
579	105304 2022 09 1 520 032974	750217-*****	조**환	190,400	수령인없음
580	105304 2022 09 1 650 008860	480222-*****	조**환	649,060	기타
581	105305 2022 09 1 520 199992	760927-*****	조**환	320,200	기타
582	105305 2022 09 1 690 326012	580722-*****	조**환	786,710	수령인없음
583	105305 2022 09 1 690 326100	580722-*****	조**환	768,620	수령인없음
584	105304 2022 09 1 650 038042	820115-*****	주**경	1,412,330	기타
585	105304 2022 09 1 550 017364	521020-*****	주**숙	190,540	수령인없음
586	105304 2022 09 1 710 002737	120111-*****	주**회** **동**합**경	10,684,730	기타
587	105305 2022 09 1 551 228364	280211-*****	주**회** **드**드	278,080	수령인없음
588	105304 2022 09 1 650 002764	150111-*****	주**회** **랜**	16,350	수령인없음
589	105305 2022 09 1 522 208125	124411-*****	주**회** **렌**	51,000	수령인없음
590	105305 2022 09 1 522 214484	120111-*****	주**회** **로**	77,870	수령인없음
591	105304 2022 09 1 710 002875	176011-*****	주**회** **리**	13,688,190	기타
592	105305 2022 09 1 530 232292	135511-*****	주**회** **리**엔**	173,090	수령인없음
593	105304 2022 09 1 510 003219	110111-*****	주**회** **림**베**트	185,130	수령인없음
594	105304 2022 09 1 551 002929	120111-*****	주**회** **모**주**건**	504,3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595	105305 2022 09 1 551 221715	120111-*****	주**회** **모**주**건**	405,9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96	105304 2022 09 1 510 003826	284911-*****	주**회** **밀**아	70,710	수령인없음
597	105304 2022 09 1 650 002813	120111-*****	주**회** **바	1,379,880	이사감
598	105304 2022 09 1 510 003047	131411-*****	주**회** **스**씨**	2,880,520	기타
599	105304 2022 09 1 650 002876	110111-*****	주**회** **스**욱**	26,340	수령인없음
600	105304 2022 09 1 510 003220	174911-*****	주**회** **스**이**이**스	1,060,790	수령인없음
601	105304 2022 09 1 520 003159	120111-*****	주**회** **승**합**발	2,077,010	기타
602	105305 2022 09 1 520 197083	200111-*****	주**회** **어	353,510	기타
603	105305 2022 09 1 522 208168	151111-*****	주**회** **어	58,730	수령인없음
604	105305 2022 09 1 582 247728	151111-*****	주**회** **어	69,340	수령인없음
605	105304 2022 09 1 510 001822	120111-*****	주**회** **어**	16,175,640	기타
606	105304 2022 09 1 710 002740	120111-*****	주**회** **영	14,138,060	기타
607	105304 2022 09 1 700 003228	160111-*****	주**회** **온**터**셔**	97,250	수령인없음
608	105304 2022 09 1 550 003205	120111-*****	주**회** **이**다*H*D* *n*.*	15,407,010	수령인없음
609	105304 2022 09 1 800 002597	120111-*****	주**회** **제**이**씨	349,990	기타
610	105304 2022 09 1 660 003011	161511-*****	주**회** **조**동**	10,600	수령인없음
611	105305 2022 09 1 580 246892	131411-*****	주**회** **트**코**아	99,610	수령인없음
612	105304 2022 09 1 800 002778	120111-*****	주**회** **티**2*	324,360	기타
613	105304 2022 09 1 510 002580	120111-*****	주**회**강**이**씨	860,690	기타
614	105304 2022 09 1 800 002979	120111-*****	주**회**다**식**	9,308,520	기타
615	105304 2022 09 1 690 003234	124411-*****	주**회**더**름	1,626,750	수령인없음
616	105304 2022 09 1 510 001770	120111-*****	주**회**더**름	11,360,310	이사감
617	105304 2022 09 1 540 000533	110111-*****	주**회**링**글**벌	175,01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618	105305 2022 09 1 540 219199	110111-*****	주**회**링**글**벌	159,180	수령인없음
619	105304 2022 09 1 530 002789	131211-*****	주**회**버**스**일	144,950	수령인없음
620	105304 2022 09 1 800 002700	120111-*****	주**회**아**아**앤**	379,480	기타
621	105304 2022 09 1 510 001709	120111-*****	주**회**에**캠	130,090	수령인없음
622	105305 2022 09 1 520 213477	134511-*****	주**회**웰**크**스	57,800	수령인없음
623	105305 2022 09 1 520 213478	134511-*****	주**회**웰**크**스	59,690	수령인없음
624	105304 2022 09 1 650 002635	131111-*****	주**회**대**법**경**	19,410	수령인없음
625	105304 2022 09 1 650 002531	150111-*****	주**회**토**정**	171,330	수령인없음
626	105304 2022 09 1 582 002932	131411-*****	주**회**한**건**이** 씨	678,620	기타
627	105304 2022 09 1 800 002518	110111-*****	주**회**후**즈**마** 센**	2,592,140	기타
628	105304 2022 09 1 510 032310	740122-*****	진**오	481,520	기타
629	105305 2022 09 1 530 222758	520807-*****	진**하	72,890	수령인없음
630	105304 2022 09 1 650 040383	890423-*****	차**리	377,850	기타
631	105304 2022 09 1 655 015806	581220-*****	차**애	345,030	기타
632	105304 2022 09 1 581 003499	281124-*****	차**재	2,540	수령인없음
633	105304 2022 09 1 560 016111	590326-*****	차**호	8,281,930	기타
634	105304 2022 09 1 530 003858	300530-*****	채**녀	56,870	수령인없음
635	105304 2022 09 1 690 003704	282004-*****	천**기	7,280	수령인없음
636	105305 2022 09 1 510 326528	021218-*****	최**	382,460	기타
637	105304 2022 09 1 582 004615	390716-*****	최**구	426,110	기타
638	105304 2022 09 1 551 005117	410725-*****	최**규	1,425,040	기타
639	105305 2022 09 1 540 234641	690118-*****	최**기	305,630	기타
640	105304 2022 09 1 522 024044	660223-*****	최**돈	319,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641	105304 2022 09 1 521 003754	291210-*****	최**두	602,950	기타
642	105304 2022 09 1 550 041702	900719-*****	최**민	736,460	기타
643	105305 2022 09 1 520 194747	921016-*****	최**석	56,940	수령인없음
644	105304 2022 09 1 522 040512	890209-*****	최**선	641,090	기타
645	105305 2022 09 1 540 301977	570530-*****	최**수	363,150	수령인없음
646	105304 2022 09 1 510 031904	730616-*****	최**숙	4,029,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47	105304 2022 09 1 550 014733	571030-*****	최**숙	673,310	기타
648	105304 2022 09 1 550 018353	600601-*****	최**숙	4,333,390	수령인없음
649	105304 2022 09 1 650 003519	282000-*****	최**식	1,672,5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50	105305 2022 09 1 650 266977	780327-*****	최**양	312,570	기타
651	105304 2022 09 1 550 006149	440913-*****	최**연	3,684,370	이사감
652	105305 2022 09 1 510 320345	570811-*****	최**연	324,980	기타
653	105304 2022 09 1 510 005381	420510-*****	최**엽	519,0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54	105304 2022 09 1 510 014982	580207-*****	최**영	419,2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55	105304 2022 09 1 521 030773	711204-*****	최**영	706,680	기타
656	105304 2022 09 1 690 032383	740224-*****	최**영	13,040	수령인없음
657	105305 2022 09 1 580 246407	630203-*****	최**영	217,230	수령인없음
658	105304 2022 09 1 510 022811	641013-*****	최**옥	225,700	수령인없음
659	105304 2022 09 1 800 016529	590905-*****	최**옥	3,083,950	기타
660	105304 2022 09 1 510 008014	480927-*****	최**운	352,810	기타
661	105304 2022 09 1 660 030112	710205-*****	최**웅	332,790	기타
662	105305 2022 09 1 521 208452	870222-*****	최**웅	65,000	수령인없음
663	105305 2022 09 1 550 215731	870222-*****	최**웅	66,7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664	105304 2022 09 1 551 019564	610620-*****	최**자	349,420	기타
665	105305 2022 09 1 551 229612	651221-*****	최**자	71,070	수령인없음
666	105304 2022 09 1 551 017279	530301-*****	최**주	488,210	수령인없음
667	105304 2022 09 1 690 029785	700909-*****	최**진	17,840	수령인없음
668	105304 2022 09 1 650 003632	282004-*****	최**참	36,630	수령인없음
669	105304 2022 09 1 650 003635	282004-*****	최**참	57,130	수령인없음
670	105304 2022 09 1 551 021204	630122-*****	최**철	18,310	수령인없음
671	105305 2022 09 1 690 276990	780522-*****	최**호	164,250	수령인없음
672	105304 2022 09 1 660 041444	910409-*****	최**홍	1,405,810	기타
673	105304 2022 09 1 560 010106	520122-*****	캐**김	4,167,960	기타
674	105304 2022 09 1 700 029306	700210-*****	탁**동	68,070	수령인없음
675	105304 2022 09 1 700 000445	110111-*****	태**개**(주)	626,820	이사감
676	105304 2022 09 1 560 002121	125117-*****	파**윤**장**공**중**	17,659,560	기타
677	105304 2022 09 1 560 016230	590508-*****	플**렌**앤**	2,353,400	기타
678	105305 2022 09 1 551 227316	120111-*****	피**스**이	74,110	수령인없음
679	105304 2022 09 1 540 013029	551127-*****	하**순	320,130	기타
680	105304 2022 09 1 650 033147	750621-*****	하**영	724,720	기타
681	105304 2022 09 1 650 003590	282004-*****	한**교	10,180	수령인없음
682	105304 2022 09 1 650 003723	282004-*****	한**교	10,180	수령인없음
683	105304 2022 09 1 690 023914	660107-*****	한**교	4,280,960	기타
684	105304 2022 09 1 530 019910	611027-*****	한**섭	4,102,700	기타
685	105304 2022 09 1 710 027599	681216-*****	한**수	1,030,920	수령인없음
686	105305 2022 09 1 540 303037	591227-*****	한**수	304,90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687	105304 2022 09 1 550 009476	501018-*****	한**숙	51,670	수령인없음
688	105305 2022 09 1 520 199143	680515-*****	한**신	423,980	기타
689	105304 2022 09 1 540 029672	700718-*****	한**욱	948,170	기타
690	105304 2022 09 1 570 004525	390210-*****	한**정	4,482,560	기타
691	105304 2022 09 1 690 004051	350313-*****	한**택	3,150	수령인없음
692	105304 2022 09 1 521 017850	520323-*****	한**향	109,840	수령인없음
693	105305 2022 09 1 520 203284	860301-*****	한**희	300,090	기타
694	105304 2022 09 1 800 007455	470919-*****	함**국	8,741,150	기타
695	105305 2022 09 1 521 317820	470919-*****	함**국	211,750	수령인없음
696	105304 2022 09 1 520 010854	530212-*****	허**	2,547,880	기타
697	105305 2022 09 1 510 211396	720129-*****	허**	74,020	수령인없음
698	105305 2022 09 1 710 317692	950710-*****	허**필	213,660	수령인없음
699	105305 2022 09 1 800 277501	830425-*****	현**우	67,110	수령인없음
700	105305 2022 09 1 520 194805	710725-*****	홍**규	53,770	수령인없음
701	105305 2022 09 1 550 215836	710725-*****	홍**규	66,730	수령인없음
702	105305 2022 09 1 550 220562	710725-*****	홍**규	65,620	수령인없음
703	105305 2022 09 1 550 316142	710725-*****	홍**규	75,170	수령인없음
704	105305 2022 09 1 580 238501	710725-*****	홍**규	71,740	수령인없음
705	105305 2022 09 1 582 247902	710725-*****	홍**규	82,640	수령인없음
706	105305 2022 09 1 582 247903	710725-*****	홍**규	82,590	수령인없음
707	105305 2022 09 1 583 259458	710725-*****	홍**규	64,390	수령인없음
708	105305 2022 09 1 650 267357	710725-*****	홍**규	77,790	수령인없음
709	105305 2022 09 1 650 270009	710725-*****	홍**규	110,66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710	105304 2022 09 1 690 036873	711125-*****	홍**기	61,520	수령인없음
711	105304 2022 09 1 650 000014	011112-*****	홍**례	94,840	수령인없음
712	105304 2022 09 1 660 036611	750304-*****	홍**원	4,340	수령인없음
713	105304 2022 09 1 583 018136	600315-*****	홍**표	150,870	수령인없음
714	105304 2022 09 1 690 018626	600905-*****	황**림	1,157,560	기타
715	105304 2022 09 1 660 004565	390401-*****	황**석	874,490	기타
716	105305 2022 09 1 660 274678	390401-*****	황**석	72,960	수령인없음
717	105304 2022 09 1 530 019339	610408-*****	황**수	1,582,890	기타
718	105305 2022 09 1 570 238480	600825-*****	황**숙	68,520	수령인없음
719	105305 2022 09 1 690 284731	600825-*****	황**숙	351,920	기타
720	105304 2022 09 1 510 004917	400907-*****	황**순	796,7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21	105305 2022 09 1 700 283377	410923-*****	황**순	398,050	기타
722	105305 2022 09 1 583 256508	640312-*****	황**연	146,300	수령인없음
723	105304 2022 09 1 700 034264	770822-*****	황**원	399,410	기타
724	105305 2022 09 1 700 289725	810703-*****	황**현	296,990	수령인없음
725	105304 2022 09 1 690 002760	120111-*****	(주)노**홀**스	429,990	기타
726	105304 2022 09 1 710 001701	120111-*****	(주)누**솔**텍	1,867,060	기타
727	105304 2022 09 1 510 003810	284111-*****	(주)더**앤**이	3,318,470	기타
728	105304 2022 09 1 800 001908	121111-*****	(주)랩**디**인	372,380	이사감
729	105305 2022 09 1 690 283557	135511-*****	(주)비**사	239,490	수령인없음
730	105304 2022 09 1 700 001692	120111-*****	(주)세**	4,325,320	수령인없음
731	105304 2022 09 1 550 001356	120111-*****	(주)세**인**스**리	208,950	수령인없음
732	105305 2022 09 1 510 213053	131411-*****	(주)수**이**베**션	79,32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733	105305 2022 09 1 550 218107	131411-*****	(주)수**이**베**션	131,350	수령인없음
734	105305 2022 09 1 551 221172	131411-*****	(주)수**이**베**션	82,940	수령인없음
735	105305 2022 09 1 580 317751	131411-*****	(주)수**이**베**션	84,730	수령인없음
736	105304 2022 09 1 690 000949	120111-*****	(주)신**도**공**	5,299,060	이사감
737	105304 2022 09 1 800 001285	120111-*****	(주)아**링**	4,253,310	기타
738	105304 2022 09 1 690 003808	284911-*****	(주)에**디**벨**먼**	60,999,150	기타
739	105305 2022 09 1 540 304230	120111-*****	(주)에**원**류**케** 션	346,340	기타
740	105305 2022 09 1 520 195582	180111-*****	(주)에**이**딩**	351,600	기타
741	105304 2022 09 1 710 001697	120111-*****	(주)에**치**메**	15,698,130	기타
742	105304 2022 09 1 800 001364	120111-*****	(주)엔**테**	95,150	수령인없음
743	105304 2022 09 1 800 001216	120111-*****	(주)엘**코**	7,235,890	기타
744	105304 2022 09 1 650 002774	124411-*****	(주)월**자**	347,890	수령인없음
745	105304 2022 09 1 522 001120	120111-*****	(주)이**	1,037,660	기타
746	105304 2022 09 1 510 002575	120111-*****	(주)제**디**	1,259,540	기타
747	105304 2022 09 1 550 001354	120111-*****	(주)천**인	3,795,950	기타
748	105304 2022 09 1 690 002367	121111-*****	(주)케**비**매**인	62,220	수령인없음
749	105304 2022 09 1 800 003801	284211-*****	(주)코**바**	3,469,530	기타
750	105304 2022 09 1 660 001290	120111-*****	(주)탐**이**크**로**	5,539,260	이사감
751	105305 2022 09 1 690 277616	110111-*****	(주)태**건**	57,420	수령인없음
752	105305 2022 09 1 550 219507	134511-*****	(주)텔**스	138,160	수령인없음
753	105304 2022 09 1 800 000490	110111-*****	(주)해**	459,970	기타
754	105305 2022 09 1 510 211715	640804-*****	C*I*C*U*L*	102,820	수령인없음
755	105304 2022 09 1 700 040420	861021-*****	J*A*G*A*I*G	6,120	수령인없음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756	105305 2022 09 1 551 229028	740604-*****	R*N*I*N*Y*	68,800	수령인없음
757	105305 2022 09 1 540 302305	600904-*****	W*N* *I* *U*Y*M*E*	426,190	기타
758	105305 2022 09 1 510 211173	700224-*****	X*H*A*J*N	93,220	수령인없음
759	105305 2022 09 1 650 269891	490729-*****	Z*E*G*A*Q*U	92,350	수령인없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816호

취득세 등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빈 외 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독촉분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독촉분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10.

남동구청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독촉분)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목	구분	등기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1	901230-*****	김**빈	28200	101599-2022-07-2-690-030540	취득세	독촉분	2022-09-06	수령인 없음	9,080,520
2	120144-*****	더*유*컴*니	28200	114002-2022-07-2-530-048890	등록면허 세	독촉분	2022-09-05	수령인 없음	307,34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81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1.
3. 공고대상 : 55주6924 외 34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2. 10. 6.

남 동 구 청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55주6924	Lincoln Continental 3.0 AWD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30	소유자 요청
2	234주5844	Q7 45 TD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30	소유자 요청
3	145하9676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30	소유자 요청
4	145호8382	A7 55 TFS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9.30	소유자 요청
5	03어9999	Mercedes-AMG S63 4Matic L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9.30	소유자 요청
6	145호9664	Tiguan 2.0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2022.09.30	소유자 요청
7	31하8077	카니발	신한카드(주)	2022.09.27	소유자 요청
8	150호4141	쏘나타(SONATA)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23	소유자 요청
9	50하0634	K5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23	소유자 요청
10	128하1199	Q7 45 TFS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23	소유자 요청
11	145하9614	Tiguan 2.0 TDI 4Motion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23	소유자 요청
12	160호4313	Touareg 3.0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9.23	소유자 요청
13	251주5882	Arteon 2.0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9.23	소유자 요청
14	145서9214	렉서스 ES300h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22	소유자 요청
15	150호2292	쏘나타(SONATA)	신한카드(주)	2022.09.22	소유자 요청

16	49하7069	K5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22	소유자 요청
17	167가8330	재규어 XF 2.0GTDI	이*랑	2022.09.19	소유자 요청
18	94다3000	포터 II (PORTER II)	박*숙	2022.09.16	소유자 요청
19	92로8030	포터 II (PORTER II)	박*숙	2022.09.16	소유자 요청
20	97어3140	포터 II (PORTER II)	박*숙	2022.09.16	소유자 요청
21	57호1460	스토닉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16	소유자 요청
22	150하1250	K9	신한카드(주)	2022.09.16	소유자 요청
23	29루4166	재규어 XF 2.2D	박*중	2022.09.16	소유자 요청
24	24더0863	디스커버리4 3.0D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16	소유자 요청
25	200부3696	A4 40 TFS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9.16	소유자 요청
26	128하6769	아반떼 (AVANTE)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14	소유자 요청
27	153호8748	투싼(TUCSON)	신한카드(주)	2022.09.14	소유자 요청
28	73마3066	이-카운티	김*원	2022.09.13	소유자 요청
29	345나6942	마세라티 르반떼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9.06	소유자 요청
30	150허3066	K7	신한카드(주)	2022.09.05	소유자 요청
31	43다3256	쏘렌토	김*태	2022.09.01	소유자 요청

제1711호

남동구 구보

2022. 10. 6. 목요일

32	128호 1913	A3 40 TFS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01	소유자 요청
33	165하2467	A8L 50 TD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01	소유자 요청
34	145하8637	Mondeo 2.0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01	소유자 요청
35	145하9717	Arteon 2.0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9.01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9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10. 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0. 4. ~ 2022. 10. 1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20-0203105	우아한혼술&혼밥그린푸드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32,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8-31	2022-10-04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032)453-2622

2022. 10. 4.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22 - 112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 간석동 3-10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3-10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3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8566	541639.96	174430.05					간석동 3-10	2022.09.22.	황동	신설
2	지적도근점	8567	541612.72	174434.83					간석동 3-10	2022.09.22.	황동	신설
3	지적도근점	8568	541533.55	174425.51					간석동 3-10	2022.09.22.	황동	신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13 호

2021회계연도 결산 고시

남동구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4.

남동구청장 박 종 효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현 액		1,264,306,476,920	1,228,200,945,670	36,105,531,250
결산액	세 입	1,302,634,255,461	1,264,253,368,439	38,380,887,022
	세 출	1,147,090,822,860	1,120,845,992,650	26,244,830,210
결 산 상 잉 여 금		155,543,432,601	143,407,375,789	12,136,056,812
잉여금 세부 내역	다 음 년 도 이 월 액		73,046,754,290	69,622,693,690
	명 시 이 월	7,500,126,270	7,370,126,270	130,000,000
	사 고 이 월	2,991,774,200	2,852,261,530	139,512,670
	계 속 비 이 월	62,554,853,820	59,400,305,890	3,154,547,930
	보 조 금 반 납 금		12,730,065,600	12,615,621,300
	순 세 계 잉 여 금		69,801,416,081	61,203,864,169
				8,597,551,912